

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9] <신설 2023. 4. 28.>
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 번호		품명	규격 등	세율 (%)	한계수량
호	소호				
0207		제0105호의 가금(家禽)류의 육과 식용 설육(脣肉)(신선한 것, 냉장 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30,000톤
0207	1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			
0207	12	절단하지 않은 육(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)		0	
0207	14	절단육과 설육(脣肉)(냉동한 것으 로 한정한다)			
		1. 절단육		0	
		2. 설육(脣肉)			
		나. 기타		0	
1602		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·설육(脣肉)·피·곤충			
1602	3	가금류(家禽類)로 만든 것(제0105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)			
1602	32	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(<i>Gallus domesticus</i>)종의 것으로 한정하 다]으로 만든 것		0	
0407		새의 알(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, 보존처리하거나 조리 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

0407	1	부화용 수정란				
0407	19	기타	오리 부화용 수정란	0	10톤	
0703		양파·샬롯(shallot)·마늘·리크(leek)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	
0703	90	리크(leek)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	대파	0		
0710		냉동채소(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썰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5,000톤	
0710	80	그 밖의 채소				
		2. 기타	대파	0		
0712		건조한 채소(원래 모양인 것, 절단한 것, 얇게 썬 것, 부순 것,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,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)				
0712	90	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				
		1. 그 밖의 채소				
		다. 파	대파	0		
0706		당근·순무·샐러드용 비트(beetroot)·선모(仙茅)·셀러리액(celeriac)·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(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)				

0706	90	기타			0	수입 전량
		1. 무				